

76 (第25回-環境水資源第4次)

2004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

I. 예산안의 규모

[세입 예산안]

- 2004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73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.7%가 증가한 20억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입 9조8천3백30억의 0.07%에 해당하는 규모임.

< 2004 세입예산안 규모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04 예산안	2003 예산	증 · 감	
			증감액	비율(%)
일반회계	7,306	5,305	2,001	37.7

[세출 예산안]

- 2004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24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.7%가 증가한 39억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 9조8천3백30억 원의 0.6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
< 2004 세출예산안 규모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04 예산안	2003 예산	증 · 감	
			증감액	비율(%)
일반회계	62,430	58,519	3,911	6.7

II. 예산의 주요내용

[세입 예산안]

- 2004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3억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7.7%, 20억 1백만원이 증액되었음.

- 주요 증가내역은

- 주차요금 수입, 준설토사 매각수입 등 사업수익이 32억3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2천9백만원 증액되었고
- 하천 및 토지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22억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1천8백만원 증액되었으며
- 수영장, 음식점 등 재산임대 수입이 17억4천만원으로 전년보다 8천4백만원 증액되었고
- 기타 잡수입, 과년도 수입 등이 1억3천5백만원으로 전년보다 7천만원 증액되었음.

< 2004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04 예산안	2003 예산	증 · 감	
			증감액	비율(%)
합 계	7,306	5,305	2,001	37.7
사업수익	3,203	1,974	1,229	62.3
사용료 수입	2,227	1,609	618	38.4
재산임대 수입	1,741	1,657	84	5.0
과년도수입 기타 잡수입 등	135	65	70	107.6

[세출 예산안]

- 2004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 세출예산은 624억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6.7%가 증가한 39억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음.

- 사업별 주요 증가내역은

-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사업비가 111억5천9백만원으로 전년보다 39억8천9백만원, 한강체육문화시설 신설 및 재배치사업비가 16억5천5백만원으로, 전년도보다 13억5

천5백만원, 자전거도로 경비사업비가 25억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3천5백만원 각각 증액되었음.

- 주요 감소내역은

- 수중보 유지보수 및 기전 시설운영비가 8억2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6천2백만원, 대중교통 연계보행로 정비사업비가 7억9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3천1백만원, 한강저수로 정비사업비가 43억9천6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5천3백만원 각각 감액되었음.
- 신규 사업예산은 6건으로 한강변 일광욕장 조성사업에 6억3천만원, 행정차량구매에 8천7백만원, 민간위탁 사업장 원가계산 용역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음.

< 200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04 예산안		2003 예산	증 · 감	
	예산액	구성비(%)		증감액	비율(%)
합 계	62,430	100	58,519	3,911	6.7
인 건 비	20,562	32.9	18,251	2,311	12.7
기본경비	3,598	5.8	3,745	△ 147	△ 3.9
사 업 비	38,270	61.3	36,523	1,747	4.8

III. 검 토 의 견

- 2004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 예산(안)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.
- 먼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요 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2004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73억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.7%가 증가한 20억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입 9조8천3백30억의 0.07%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.
-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624억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6.7%가 증가한 39억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9조8천3백30억 원의 0.6%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.
- 다음은 주요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첫째, 한강 저수로 정비사업의 재고에 대한 의견입니다.

- 한강 저수로 정비사업은 지천합류부와 한강본류에 퇴적되는 토사를 적기에 제거함으로써 한강 홍수위를 유지하고 주 운항(수)로의 수심을 확보할 목적으로 '87년부터 689억원이 투입되었으며 '04년도 예산안에 43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.
- 이는 홍수시 수위를 유지시키고 소방선, 행정선과 유람선 등의 운항수로의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일용 타당하다 할 것이나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689억원이 되고 매년 계속하여 50여억원씩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써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.
- 이와 같은 사업은 밀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는 격이나 다름없습니다. 43억9천만원을 들여 한강의 토사 또는 퇴적물을 제거(준설)한 후 다시 큰비가 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50억원이 아니라 500억원을 들여 준설한다 한들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.
-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을 매년 할 것이 아니고 3년 또는 5년주기로 한강의 퇴적물이 어느 정도 쌓이는지를 보아가며 준설여부를 심사하여 정말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홍수 등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경우에는 재해기금 또는 예비비를 투입하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.
- 또한 인위적인 사업으로 인하여 한강수계의 생태계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할 것이며 아름다운 한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새롭게 조성됨을 파괴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. 한강은 오랜 세월동안 자연적으로 여의도가 형성되고 여의도 샛강이 조성되며 밤섬, 선유도 등 자연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자연의 섭리로 아름답게 변화하는 한강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토사를 제거하는 것은 자연파괴라 할 것입니다.

78 (第25回-環境水資源第4次)

- 또한 유람선 항로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설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유람선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.
- 따라서 한강 저수로 정비사업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할 것이나 매년 이와 같은 사업을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한강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에 대한 과제문제 유람선에 대한 수익자부담과제 등을 고려하여 재고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며, 그리하여 아름답게 변화하는 한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.

둘째, 수상스키 선착장 개발사업비에 대한 의견입니다.

- 수상레포츠 활동의 다변화 추세에 따른 한강내 수상스키 선착장을 개발, 확충하고 수상스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화, 난지, 망원지구에 선착장 2개소 마련나시설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2억중 2004년 예산안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.
- 이는 일부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한강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일응 타당하다 할 것이나, 수상스키는 대중스포츠라기보다는 일부 계층에서만 이용하는 스포츠라 판단됩니다. 따라서 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할 여지가 있고 소음공해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, 환경단체와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단체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.

셋째, 한강공원지구사무소 증축에 대한 의견입니다.

- 한강시민공원내 공원관리 지구사무소를 증축하기 위하여 7개(이춘, 망원, 양화, 광나루, 잠실, 뚝섬, 잠원)지구 증축사업비 1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.
- 이는 그 동안 하천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공원관리지구사무소를 적법하게 개선하여 한강 시민공원의 이미지와 공신력을 회복하고 체적한 사무공간확보와 한강수계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때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고무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다만 2003년도 제1차 추경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법한 시설물을 알면서도 이제 와서 보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, 특히 불법시설물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방치된 시설물이 있다면 이는 불법을 단속하고 계도하여야 할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불법을 묵인 방조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, 이를 양성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조치하여야만 할 것입니다.